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15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상정된 안건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2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11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1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15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15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건 1번과 2번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해서 넣은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거나 또 부족한 조직과 지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화와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법안을 1번 안건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19세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요건을 18세로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선 필요한 또 시급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께서 들어오고 계시지 않는데, 국회 밖에서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마련한 심사자료와 함께 국회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함께 심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10시11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소년사법 통합기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 기존의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4조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소년이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범죄 학습을 방지하고 소년에 특화된 처우를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15조의2 신설입니다.

소년사법 통합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도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년사법 통합기관이 기존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 단계까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우 체계를 마련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고, 자구 수정으로 안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소년’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조항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5조의2제4호는 교육 대상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로 규

정하고 있으나 문맥상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호와 관련해서, 청소년과 소년에 대한 정의 관련해서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대상이 소년법의 소년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청소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6호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안 제15조의2제1호에 따라 현행법 제15조제4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장의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 및 근거에 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준용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와 제15조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현행법 개정 사항으로 자구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한 6개월 정도로 시행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아서 부칙을 6개월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개편해서 초기 예방 기능과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연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전담기관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소년 보호관찰의 독립적인 운영은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이미 서울·광주·안산 시범운영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는 소년과 성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보호관찰 등에 있어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만드는데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열여덟 군데에 있는 건가요? 이 열여덟 군데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를 들면 서울은 전체에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아닌가? 서울과 서울남부 이렇게 나뉘져 있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나뉘져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지역당 하나 정도 설립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균형 있게 배치가 되고 역할이 분담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 여기 신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는 기관을 다 활용을 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 청사들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게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차 청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희 위원** 현재 청소년범죄예방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국에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 열여덟 군데를 지금 사법 통합기관으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5개 기관은 기존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를 활용하고요. 11개 기관은 기존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 청사를 마련할 예정이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력해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아니, 같은 취지라서 다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 그렇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법무부차관님께 여쭙보겠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15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로 숫자가 나오는데 성인하고 소년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기관을 신설하면 그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소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가요?

그러니까 업무가 새로 생긴다는 것보다는 업무를 분리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항상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하겠다고 하면서 인력만 더 요청을 하지 말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도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순증 인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관찰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성인 보호관찰 외에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1개의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소년사범 약 70~80여 명의 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인 보호관찰 1명 대비를 해 봤을 때 약 3배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서요 지금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약 423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360여 명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기존의 보호관찰소에서 이체해서 재배치를 함으로써 증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여하튼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관도 늘고 인력도 느는 거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지금 필요한 인력 420여 명 중에 360여 명을 기존에 있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원의 범위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 적은 폭이고 새로운 기관 창설에 필요한 인력과 소년 보호관찰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력 정도의 추가 증원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18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기존의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성인과 소년을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소 같은 것들을 또 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지소 같은 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범죄예방정책국장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지금 새로 신설되는 기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 소년보호과를 신설을 해서 그 해당 과가 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18개 지역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별도의 기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꼭 필요한 해결 방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거면 모든 보호관찰소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단순히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결국은 다른 데도 보호관찰과를 독립하는 게 장기적인 방침인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관찰에 대해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선진국형 보호관찰제도이고요. 기존에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함으로 인해서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러 갔다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폭행이 있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한 소년이 그와 같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낙인효과 비슷한 부작용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시다만 현실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원과 또한 제도 운용의 효율성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상당수 되어 있는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관을 분리하도록 하고요. 인원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관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보호관찰과를 신설해서 최대한 분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차관님, 지금 소년의 보호관찰 대상 비율이 엄청 굉장히 높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추가로 63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3명으로 하면 지금 1인당 연간 1억 1000만 원, 63명의 추가 인력에 69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이 63명 정도의 추가 인력 증원으로 이렇게 가능하겠는지, 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성인보다 3배의 인력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업무 부담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업무 부담을 한다면 그러면 63명만으로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선 보호관찰소 현장에서 진짜 1명의 보호관찰관이 정말 많은 인력에 대해서 공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까지 너무 많은 인력을 저희가 요청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박은정 위원 사실은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63명이 아주 최소한일 텐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1명당 담당하는 인원이 30여명 수준인데요.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약 팔구십여 명, 약 서너 배가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함께 보호관찰 면담을 할 때마다 함께해야 되고 그 지도의 강도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업무량이 3배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신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인력이 증원되거나 하는 것도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규모를 산정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출범되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소년에 대해서 선도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력 증원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보호관찰 담당자의 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거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경우에 이 63명만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3배라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까지 다 봐야 돼서 그 업무량이 3배라는 건가요, 숫자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평가하기를 업무량이 3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업무량이 3배다. 그러면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성인은 80~90명 하는데 그러면 소년은 얼마나……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일선에서 확인한 바로는요 평균적으로 약 40명대 수준이고요, 주요 대도시에서는 약 60~70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3배를 하게 되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약 2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소년사범들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 성인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상태에서는 범죄 예방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분리해 가지고 따로 새롭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추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무부에서 챙겨 가지고 소년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죄 예방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약 4% 수준인데요, 소년은 3배에 달하는 12%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이 잘 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그러면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기관의 이름은 혹시 뭐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직제상으로는 ‘소년보호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뭐로 하실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소년보호전문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소년보호전문기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게 공식 명칭입니까, 이름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저희가 준비한 안으로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소년보호전문기관.

○박균택 위원 좀 보통명사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박균택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쨌건 이게 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아이들 가운데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 예컨대 이게 범죄 처벌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왜냐하면 예전에 갱생 뭐 있었잖아요? 그것 이름을……

○법무부차관 이진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다른 명칭으로 해서, 꿈키움센터 등으로 해서 명칭을 2개로 함께 썼던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예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소년들에게 지금 낙인효과 등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명칭을 더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예전에 갱생보호원도 무슨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주민 수용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마 이것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에 보호관찰소 지금 위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제기됐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명칭이라도 좀 따뜻하게 바뀌서 해야…… 이 지역 새로 11개 청사를 또 빌린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반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다 협의가 됐다라고 전문위원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 신설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서울·안산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분석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상태로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라도 받아야,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그것을 보고 나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진행 상황……

○**소위원장 김승원** 중간평가라도 위원님들께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판사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일이 많아서 그냥…… 무슨 결정이라고 하나요? 불심리 결정, 불송치 결정, 뭐라고 하지요, 불심문 결정?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불심리……

○**소위원장 김승원** 뭐라고 하지요? 그냥 가정위탁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불심문 결정, 아시는 분 없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불심리 결정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불심리 결정이 있고.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그 위가 제일 약한 게 가정위탁, 부모한테 위탁하는 것 그게 10호 처분인가, 저도 오래돼 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불심리, 그 위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보호관찰 기관에다가 교육을 맡기는 것……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쨌건 이 교육시설이 적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불심리 결정이라든가 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라는 통계까지는 잡히기 어려운데요 저희 수강명령 사례를 들면, 수강명령도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문기관에서 통합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만을 전문으로 수강하기가 어려워 사설기관에 많이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설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설도 열악하고 수도 많지 않고 또 상담 및 수강에 필요한 시간당 책정된 예산이 1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이 꺼리고 있어서 이 수강명령 위탁기관 찾기가 어려워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불심리

결정이나 가정보호 위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정법원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아이들이 법을 어기고 처음으로 이런 사법기관에 왔을 때 거기서 제대로 이게 ‘법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왔다가 그냥 집에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니까 ‘별것 아니네’ 하면서 다시 또 범죄 유혹에 빠지거나 재범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법원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속칭 소년사법 통합기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에서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할 경우에 그 보호관찰 이행을 이 전담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보호관찰부터만 해당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외에 지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검찰에서 처분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도 소년비행예방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 거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받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까?

혹시 담당 국장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으로 돼 있고요. 번호가 올라갈수록 중한 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위탁이나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위탁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요. 2호부터는 보호관찰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2호는 수감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1년간의 보호관찰, 5호는 2년간의 보호관찰입니다. 6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은 6개월의 기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호는 병원·요양소 등에 위탁하거나 또는 소년보호기관 중에 의료재활소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처분이고요.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래서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 중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기관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2호부터 2호 수감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그다음에 5호 장기 보호관찰, 이렇게 네 가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6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5호하고 병과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도 저희가 일부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곳의 대상 아이들이 된

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밑에 소년원 가는 아이들 거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아이들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소년원은 지금 전국에 10개 소년원이 있고 2개의 심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9호나 10호 처분을 하게 되면 소년원으로 가서 소년원에서 학적이 연계된 애들은 학적이 연계될 수 있는 소년원, 서울소년원·전주소년원 등으로 가게 되고요. 학적이 연계가 안 된 소년들은 직업훈련 소년원,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 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아이들은 왜 이 기관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교화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이제 보호관찰……

○소위원장 김승원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떨어지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년원은 기본적으로 수용 처분이기 때문에, 6개월~2년 동안 수용돼서 하는 처분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은 집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외출제한 명령이나 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여기가 소년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소년원 장단기 수용을 하든 그 아이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아이가, 옛날로 치면 갱생, 아무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예, 그런 정책은 만들고 있고요. 소년원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년과에서 전담을 하지만 소년원 아이들이 석방될 때는 그냥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이 결합된 임시퇴원 제도로 석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6개월~2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계가 돼 있고……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관님, 이 기관이 제가 볼 때는 소년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같은 것이 되어서 수감 중인 아이들도 함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원을 늘려 달라, 예산을 달라 하는 그런 근거가 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말씀 취지 잘 알겠고요. 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10시38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상 자격·직종 등의 요건으로 규정된 연령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미성년자’로 규정된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정부의 미성년자 연령제한 일괄 정비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원이 되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공익법인의 예결산,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정관의 변경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인바 일반적인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인 18세 미성년자에게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는 5조 6항 1호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시면 연령제한 완화 관련 일괄 정비 목록입니다.

정부가 8건의 법률안을 제출해서 지금 6건은 처리가 됐고 경찰청과 법무부 소관 2건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본 법률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제한 규정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자’로 하여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와 같이 완화될 경우 사회 일반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의 임원 활동을 통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할지의 여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 연령제한 완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공익법인 임원의 업무와 책임의 성격,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법무부차관님, 2페이지 자료 보면 결격사유들을 18세로 완화하는 게 정부의 일괄 정비 개정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법률, 어떻게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공익법인만 말고 어디까지 다 미성년자를 18세로 바꾸시는 방침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부 방침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법무실장이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실장 서정민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자료 7페이지 참고자료 3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취업이라든지 사회참여 부분에 있어서 18세 정도면 참여해도 가능하겠다는 쪽을 취합해서 정부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참여 부분은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 활동, 법무부는 공익법인 임원,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 임원 그리고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등등 청년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확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원칙이 이런 법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 추상적인, 전체적인 기준을 여전히 모르겠어서……

예를 들면 대학생 중에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좀 일찍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연령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일괄해서 찾는다면 이런 취지인지가 궁금한 건데요.

실장님,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서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왜 그러냐면 기준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하여튼 정부 방침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법률들을 쭉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법률도 심사할 때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청사항은 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각 정부기관에 청년보좌역 등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정책 관련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견 수렴도 거치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검토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성년은 19세고 이사 연령은 18세로 낮췄으니까 그사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 행위능력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정대리인 동의 같은 거 안 얻어도 되는 거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취임할 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요, 취임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요새는 이사의 책임론도 많이 등장하는데 18세나 19세 그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예컨대 어떤 공익법인의 다른 이사들의 의견 따라가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높지는 않을 텐데 예컨대 여기에 보면 학자금·장학금, 연구비의 보조 같은 것을 할 때 요새 청탁금지법상의 이해충돌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그냥 안건 올라오고 그러면 자기 의견 내고 같이 동의하다가 책임을 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사실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있던 성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잘 모르고 선의에 따라서 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공익법인이 사실은 횡령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이사로서 수사 대상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은 또 열심히 참여해 가지고 이사로서 사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보호장치랄까 그런 거는 차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그렇지 않고 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이사로서의 책임.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그 책임의 영역까지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런데 이사의 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공익법인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역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은……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저는 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까지 같이 딸려 들어가서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그 친구들은 사실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건데 공익법인의 횡령이라든가 또 불미스러운 일에 얽여서 괜히 수사받고 그러면 미성년자, 어떻게 보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무실장님이신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서정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록을 위해서 이름 말씀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실장 서정민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새기고 공익법인 주무관청에서 각종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승인·감독하는 부분을 더 엄밀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능력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더 좁은 개념입니다. 학술, 자선 그리고 청년들이 자유로운 자선·봉사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원으로서 법인의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러 재산행위 이런 것들이 잠탈의 우려가 없도록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권을 엄격히 행사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그 점을 잘 살펴 주시고요.

미성년자인 이사의 의사표시 취소,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지요? 집합행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제가 변호사 업무를 많이 떠났더니 이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의사결정이 단독 의사표시가 있고 또 계약과 같은 쌍방이 있고 그다음에 집합적인 의사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회는 집합적인 의사표시의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그걸 취소하고 쪽 빠질 수가 있나요, 의결 비슷하게 되는 건데? 저는 못 빠질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서정민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10시50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법안 심사자료 목차 10번, 공소심의회 설치까지 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위자료를 좀 보완해서 한 27페이지 늘어난 지금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나 경찰청 의견들을 더 넣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좀 수정되었습니다.

오늘은 7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김한규 의원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지금 현재는 고소인만 되어 있습니다—고발인은 제외되어 있는데 고발인을 추가해서 이의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대신 이의신청기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사건이 검사에 송치된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현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했었는데 이게 개정안대로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의신청권 확대 문제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수사 실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문구 표현과 관련해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 1호는 송치 사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문 정리하고요. 제 생각에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완수사요구 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신청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4개 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정신청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재정신청권자를 현행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인과, 지금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데 고발인까지 넣어서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록 확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 모두에는, 김한규 의원안에는 아까 그 확대 부분은 없고요. 대신 김한규 의원안과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모두에는 피의사실공표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게 모든 고발인까지 확대되면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고 있는 형사절차의 구조가 좀 많이 변경되는 거라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법원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가중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재정신청을 허용하게 되면 피해자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과 공익 부분을 비교형량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비된다면 공소청법에 있는 재항고 제도 부분도 같이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2개의 개정안에서는 지금 고등법원 관할로 되어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각급 공소청과 법원 간의 대응구조를 고려한다면 이론상은 고등법원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항고절차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았을 때 항고법원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으로 낮추신다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재정결정 유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은 기각 결정과 공소제기 결정 2개만 있는데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소·고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실효적인 제도로 만들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재정신청의 심판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수사 부분은 심판하지 않는데 이 부분까지 넣어서 명령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기관에 자기의무를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권력분립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공소유지를 하더라도 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해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부분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는데요. 과거에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저희가 규정을 한 적이 있다가 2007년에 다시 검사로 환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전과 달리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증거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공소유지담당자 간에 큰 차별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그 외에도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절차 개선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있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신청 그러니까 당사자에 증거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인한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담보제공 제도를 명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공소제기 의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로 연장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판단 사항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신청인한테는 유리하지만 피의자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당사자에게 증거신청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신청 쪽으로 무게가 옮겨지게 되면 두 직권조사와 당사자 신청에 대한 증거조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법문을 명확히 해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도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일 거고요.

사건기록 열람·등사하는 부분은 단점으로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 피해 등 여러 가지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람·등사의 사유, 제한, 조건 등을 좀 더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 담보제공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공소제기의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면 의제 조항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101쪽입니다.

피의자 재정신청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피의자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과 타관송치 처분에 대해서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제도로 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특히 기소유예처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재판청구권 차원에서는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법원의 업무 부담 그리고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보완을 하게 된다면 항고전치주의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면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개정안에는 신청기한이라든가 절차 이런 상세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은 더 추가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수사절차에 관한 조항인데 2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김한규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검토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중수청법에 관할 사건에 대한 이첩 권한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면 조문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요. 지금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공무원까지 포함되는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108페이지입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과 관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서 공소권이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다음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문 표현과 관련해서 판례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제기’ 이런 법문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11번,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11시부터 공수처에서 오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이재승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를 위해서 우선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계속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히 2022년 5월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익단체에서 피해자 대신 고발을 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의 주체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의신청권의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고 불송치 제도의 통제 수단인 재수사요청기한 90일, 그다음에 1회 횡수 제한 및 불이행 시 강제 수단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사개시 주체인 경찰과 다른 기관인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의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부당한 축소·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불송치 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제한한다면 소추권자도 아닌 경찰의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보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의신청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외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12번, 재정신청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 관련해서 총 5개 소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5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청권자를 모든 고소·고발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되는 것으로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고 민원성 고발의 증가로 분쟁이 장기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에서 피해자인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은 피공표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필요성, 피공표자의 재노출로 인한 권익침해 위험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신청 관할 법원 변경 관련해서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에 따라서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불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외적 사법통제라는 중대성이 있으므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현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결정 유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소제기 결정 외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와 그 범위를 직접 지시하는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라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도입과 관련하여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별도 비용과 보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신청 심리절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고소권자 등에게 재정신청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와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증거신청 허용과 관련해서는 재정 심리절차는 ‘결정’을 위한 항고에 준하는 절차로서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은 재정신청사건의 직권주의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열람·등사 허용 관련해서는 재정신청권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남용할 여지가 있고 관련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담보제공 명령 및 미납 시 기각 제도와 관련해서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경제적 약자의 불복 수단을 제약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피의자 재정신청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것은 제도 본질에 맞지 않고 현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도 거의 없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수사절차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공수처법·중수청법 등 법체계상 충돌되어서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일반 행정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수사기관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단 1명이라도 있는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있다고 보입니다.

15번, 공소권 남용의 효과 법제화 관련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327조제2호 및 확립된 판례 법리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이라는 요건은 그 판단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개정안의 불확정한 개념을 토대로 위 사안을 주장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11번부터 15번까지에 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신중검토 또는 보완검토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재정신청 제도 개선 중에서 신청권자를 모든 고발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다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재정신청 사건이 대폭 증가해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의 고발인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력 확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고소나 재정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은 단독재판이 원칙이므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임을 명시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현재와 같은 2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법원 변경 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각 사무분담의 조정, 대법원규칙 개정, 전산 시스템 변경, 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의 사무처리 절차 연수 등 시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두고, 개정법 적용 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부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재정신청 제도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 헌법소원이 있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재정신청을 허용한다면 적어도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과의 균형상 공소법 개정을 통해서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출석시켰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쪽 논의해 왔던 형사소송법 심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 오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서면으로 갖고 온 게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서면으로 지난번에……

○소위원장 김승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에서 도와주시면……

한 12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출석하여 공수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법안 245조의11,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등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 적용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는 구조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준용 대상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신설하고 특검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197조의2제6항·제7항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추가 수사절차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계가 있어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 197조의2제6항·제7항을 신설하여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197조의2제7항은 제4항 전단(직무배제·교체·징계요구)까지 공수처 검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급 공소청의 장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그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신분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시·견제의 주체를 피통제자로 전도시키는 것으로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김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거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수사처검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인력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추가수사 의뢰 절차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6페이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 공소청 검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 추가수사 의뢰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은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죄 등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 대

하여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추가수사 의뢰에 따라서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안 197조의4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법무부차관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가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정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안 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입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수처·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및 경찰 관련법에 3급 이상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의 수사범위에 해당함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203조의2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의 수정 필요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치 절차 관련해서 ‘인치’라는 용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은 법 제71조, 71조의2 등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상단 보시면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장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검찰청이 수사 중인 구속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거나 검사가 구속피고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검찰청이나 법원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인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당시 윤석열 피의자를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여 인치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12조의 4항·6항 진술조서, 검증조서 관련입니다.

이 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진술조서와 검증조서의 작성 주체를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진술조서나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항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4항을 준

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수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정하는 안 245조의11의 준용 규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4항과 6항에서 정하는 조서의 작성 주체 역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 개혁입법에 맞추어 공수처·중수청·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여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신분제에 관한 규정, 관련 범죄의 개념 등 수사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통일적·체계적 정비 역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아까 검토한 것……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아까 재정신청까지 포함해서. 그러실까요?

○박은정 위원 예.

법무부차관님,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전반적으로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전부, 거의 다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유일하게 찬성의견 내신 게 고발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찬성하셨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고발인 이의신청이, 사실은 우리가 고소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면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사실상 피해자인 고발인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의신청이 폭넓게 받아들여진다고 실무상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에 다른, 차관님이신가요, 누가 오셔 가지고 이렇게 또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고소인 이의신청권에 더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추가해서 보다 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발인 이의신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어서 좀 유감이긴 한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은 장영하 변호사가 정치인일 때 고발한 사건이고 그 사건은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해서 불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이의신청 하자마자 검찰에 바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 사건은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형사 피의자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신분에서 해방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적인 수사, 선택적인 수사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재정신청 결정 유형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재수사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사권과 사법권의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에 배치된다 이런 의견인데 법원행정처는 재수사 결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 근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지금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입되면 재정신청 제도가 좀 더 의미를,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무부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하긴 합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가 미진해서 인용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만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인용이라든가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박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단체,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대리하시는 혹은 그것을 보호하시는 그런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 보면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이 부분만 조금 더 해 줬으면 이 사건은 기소가 될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모르니까 재정신청이 계속 기각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재정신청의 결정 유형 중에 재수사 결정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도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저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괜찮으세요?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있는데요. 정말 성범죄나 아동학대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있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성남FC 사건 등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공백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남고발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은데요. 고발인이 여러 명이 있고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반복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여러 당사자인 고발인들이 돌아가면서 할 경우에 이런 경우의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법무부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 번 더 그 결과를 점검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수사기관에게 연장을 포함하여 20일로 주는 안도 있고 또 줄여서 7일, 7일 주는 안도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 내지는 수사권·기소권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연장 신청의 주체도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논의됐으면 하는 부분은 구속사건뿐만이 아니지만 공소청……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에 결국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청 검사와 어떤 수사협의를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구속사건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구속해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구속취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의 수사협의를 관한 규정은 최소한 공수처법에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구속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저희 심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김용민·박은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는 안 203조의2와 같은 특칙은 공수처 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수처법에 따로 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게 뭘 뜻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 구속 사건의 구속의 최초 주체가 경찰이 되었던 사건에서 검사가 그 사건을 구속 송치를 받아서 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공수처 검사와 또 공소청 검사의 구속사건에 대한 권한분배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수처법에 오히려 규정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조문을 한번 구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조문으로 해서 한번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이 영장집행이나 형집행 관련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갖고 온 의견이라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특별히 갖고 온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영장집행 또 형집행 등등 여러 관련된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토론……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아까 공수처 차장님께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는 게 적절하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공소청에 보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은 직접 검사가 이해관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업무상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아까 실무상 부르는 용어가 수사협조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추가수사 내지는 수사협조라는 용어를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그냥 기관 간의 자존심의 문제인가요?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법체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다 준용을 하면 미이행 시의 징계요구 이런 부분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수처 검사의 징계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검사의 의사가 아니라 공수처장의 결정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차장이 보통 위원장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징계의 실효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지위, 징계의 실효성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물론 공수처 자체 기관의 결정이긴 할 텐데 보완수사를 요청해서 공수처의 담당 검사나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안 하면 그래도 뭔가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징계 방식이 공수처법에 들어가든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든 그것을 무작정 공수처가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고 합리적인 공소청 검사의 요청이 있는데 그걸 안 따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협조 요청이든 아니면 보완수사요구든 그것에 대해서什么的 제재 수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제재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행강제 수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래서 저희가 수사협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 조항이 공수처법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시각이 다르다, 이것은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의사소통을 하는 법률적인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락을 해서 ‘왜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해결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처럼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

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제재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실효성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기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단순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매 사건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매 사건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자체 보완—그때는 보완수사가 가능했을 때니까요—자체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한 사건도 있고 상의 없이 바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소통의 통로가 법률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도 고민해 보긴 하는데요. 만약에 현재 저희 계획대로 하면 10월 2일 이후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공수처가 생각할 때 본인들은 송치를 했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기관 간의 권한 자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 동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적절한 협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나만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준칙에도 수사협의체 설립 근거 규정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설립협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기관 간에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 효율적인 수사,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취지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직 간의 구분을 해 놓는 건데 그 예외가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관 간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능 간 구분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꼭 지휘·감독 관계라기보다는 공수처의 수사를 제3의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제공했는데 공수처만 특별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기관 간 통제는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공수처 차장님, 올해 사건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셨습니까, 금년 들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불기소처분까지 포함……

○**박균택 위원** 기소의견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공소제기 요구를 했던 사건으로 기억나는 것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사건 연초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 전 감사원 기조실장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

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은 불기소처분이 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5월 달에 불구속기소를 해서 1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3건 정도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기소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기소가 됐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공수처 차장님,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법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검사는 법률가이고 사법경찰관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기에 충분한 구성요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이 증거로 수집하도록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이런 수사·기소 분리의 설계인데, 공수처 검사와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 간의 관계를 그렇게 설계하는 것은 대등한 법률가 간의 관계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공수처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전속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교체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권한, 상급기관이 가지는 권한—그렇다고 지금 사경에 대한 권한이 상급기관으로서의 권한이라는 뜻은 아니지만—그런 권한을 가질 때 공수처에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어서 약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수처법의 제정 역사를 살펴봤을 때 최초 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만, 기소권만 주어졌고 수사권만 주어지는 경우로 많이 지금 공수처법이 제정되었는데 요.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살펴보실 때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정리해 오신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공수처법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형사소송법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 차장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먼저 구현하려고 했던 기관 아닙니까, 맞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김승원 거기다 또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안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5년 정도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기소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인 지정 같은 게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수사를 다 해 놓고도 타 기관으로 이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사의 효율성이나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방해가 되는, 오히려 너무 관련 범죄 규정을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늘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이 법사위에서 공수처 질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등등의 질타를 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시면 아마 또 비슷한 추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모델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었고 그 결과를 국민께 한번 보여 드렸으면 지금 수사·기소 분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고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에게 구명 로비를 했는가, 통신기록은 1년밖에 기간이 안 되니까 그 통신기록 압수수색 좀 하라고, 그래서 7월 17일인가 7월 30일인가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통신영장을, 통신사실 확인 받아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에게 그 자료를 넘긴 덕분에 7월 달에 의사 연락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수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통신기록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통신사실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것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00-7070 대통령실 관련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는 일반 유선통화니까 시기상 제한은 없을 것 같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저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시켜도 어쨌건 윤석열 때는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수사가 미진하고 또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쇄신이랄까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지요.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던 모습은 또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검사의 어떤 태도 아니면 열정에 따라서 수사 역량의 차이 또 방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어떤 기관이 혹은 어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수사했던 것은 다 기록에 남기고 또 수사 과정 중에 획득한 것은 다 전자화시켜서 항상 나중에라도 사후 검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수사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의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등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사관들도 부담은 없을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을 다 체크만 하면 나중에 법왜곡죄라든가 그런 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그 체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일종의 의사의 과실 여부와도 상관이 되는데 의사가 사람을 다 고치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수준의 의료기술 정도의 주의 의무만 기술이면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과실로 혹은 고의로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평균 수준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래도 정형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관님은 어떠세요? 공수처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수긍이나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차관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수사기록 전자화 문제라든가 또 어떤 범죄행위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러한 것들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절차상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공수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 한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여러 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부분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판사·검사 그다음에 경찰관 등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협의 내지는 협력 등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 2023년 말에 송치된 이후에 2년 반가량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만 기소를 하고 12억 9000만 원 상당을 불기소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소청이 되게 되면 검사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과 그것을 송치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유무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소청 검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상, 증거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사유상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이행 절차는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간략히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악성민원인이나 시간이 많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 없는 고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고발을 할 수가 없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 경찰 인지사건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도 사실상 안 되고 오히려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이 더 활용돼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취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건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찬성하는 취지는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함으로 인해서 입는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려 사항도 같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사건들이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고 그 고발인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발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피고발인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확정적인 지위에 있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은 지금 불송치 종결권을 사경에게 부여하는 것들이 이러한 절차적…… 피고발인이나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적 약자인 고소·고발인은 하나의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 고소·고발과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경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송치받아 가지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전건송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종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좀 묻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공소권 남용 관련해서 공소기각 판결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3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저희 심사자료 11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사자료 보면. 의견을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법원에서 우리 판사분들이 당장 검토를…… 이것도 직권조사 사유 아닐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온 문구들이 입법화된 것이어서 저희가 따로 의견을 대신하지 않았습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찬성한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적극 수용?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중대한 위법수사…… 예컨대 지금은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 동의·부동의 정도만 받고 그냥 바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 증명력에 대해서 대부분 판단이 들어가는데 증거능력의 신빙성, 예컨대 ‘이건 위법수사에 의한 거다’ 이게 공소기각 판결사유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먼저 들어가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이 돼 버리니까……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인권침해가 있거나 또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폴리바게닝 시도가 있거나 그런 것이 나오면 그냥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런 취지로 판례가 정립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증거가 오염되면 또 오염된 증거로 재판이 된 경우에 그 재판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형사 시스템에?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예컨대 배심원들에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피의사실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제공됐다면 배심원의 판단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체를 아파 취소시키는 것도 제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건데 이거는 법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판결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식의 뭐가 예상이 된다, 또 이런 것에서 보완할 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라든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사실은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드물게 나오는 사례인데, 특히 변호인들에 의해서 적극 주장이 되면 심리에 들어가고 그런 사례들인데 일단 외국의 입법 사례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판례에 있었던 사례니까 그런 걸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유형화해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송무 선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주 초까지 한번 검토해서 일단 초안이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오늘은 저희가 예정한 15번까지 독회를 했고요. 나머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되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위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2개 법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실장 서정민

범죄예방정책국장 송중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